

온라인쇼핑 개정세법

판매교육센터 지침서

우체국B2B

온라인쇼핑 개정세법

- 목 차 -

- 주요 개정세법

 - 부가가치세

 - 부가가치세 시행령

 - 조세특례제한법

- 개정세법 해설

 - 사이버몰을 통한 통신판매업납세절차 신설

부가가치세

- 명의위장사업자(배우자 명의 제외)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(공급가액의 1%) 신설
- 신고·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부당신고 및 무신고시 가산세 중과
 - 무신고가산세 20% / 부당·무·과소신고가산세 40% /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%
 -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% / 일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%
- 세금계산서 미교부, 위장·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과 → 공급가액의 2%
-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시 휴업자·폐업자·과세유형전환자도 과세표준을 6월 환산적용
 - ☞ 2007. 01.01 이후 신고분부터
-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없어도 환급 결정
 - ☞ 2007. 01.01 이후 납부분부터
- 신용카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시 이변확인 규정 삭제
 -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 5년간 보관시 공제됨
 - ☞ 2007. 01.01 이후 신고분부터

부가가치세 시행령

- 부가통신사업자(옥션·G마켓 등)를 통한 통신판매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
- 부가통신사업자 (옥션·G마켓 등)를 이용한 통신판매업자로 별도 사업장이 없는 납세의무 면제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하여 등록하고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(2007.07.01 이후 공급분부터)
- 부가통신사업자 (옥션·G마켓 등)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업무(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등)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신설(2007.07.01 이후 공급분부터)

조세특례제한법

▪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

→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교부할 수 있도록 함

☞ 2007.07.01.이후 공급분부터 시행

- 발행대상 :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경우
- 신청방법 : 공급시기로부터 15일 이내 “거래사실 확인 신청서”에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
- 대상금액 :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- 거부사유 : 신청기한 경과, 미등록자 및 휴·폐업자와 거래, 월 2회 이상 신청한 경우

▪ 현금거래 확인제도 시행

→ 소매·음숙 등 영수증 발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함

☞ 2007.07.01.이후 공급분부터 시행

- 발행대상 : 소매·음숙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
- 신청방법 : 공급시기로부터 15일 이내 “현금거래 확인 신청서”에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, 지방국세청장, 국세청장에게 제출

사이버몰을 통한 통신판매업 납세절차 신설

- 사업장 정의
 - 원칙: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
 - 예외:별도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사업장
- 사업자 등록
 - 총괄등록: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납부의무면제대상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신청
 - 개별등록:총괄등록대상자 외의 통신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신청

*** 총괄 등록 대상인 「통신판매업자」 기준(재정부령 2007.04.02 신설)**
1.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
2.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

- 사업자등록번호
 -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☞ 사이버몰에 등록된 아이디
- 납세관리인
 -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부가세 신고·납부 업무 등 처리
 -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